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

2018. 8. 27.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목 차

I. 특별검사 일반현황	3
II. 수사의 진행경과	10
III. 주요사건 수사결과	13
1.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순위 조작 사건	13
2.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순위 조작 공모 사건	22
3.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4
4. 故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	25
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건	27
IV. 의혹사항 조사결과	29
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부인의 경인선 관련 의혹	29
2.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 원 수수 의혹	29
3. 윤평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및 아리랑TV 비상임감사 제안 의혹	30
4.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김동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의혹	31
5.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등 불법자금 조사	31
6. 김경수의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32
7. 안철수 대선 캠프 선거홍보회의 내용 유출 의혹	32
V. 검찰이관사건	33
1. 송인배 현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33
2.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	34
VI. 제도개선 사항	35
VII. 맺음말	37

I 특별검사 일반현황

1. 특별검사법의 제정배경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은, 2018. 4. 13. 드루킹 등 3명이 구속된 사실이 보도되고, 이어 여권 핵심 인사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은 2018. 4. 14. 및 16. 2회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선언,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었음
- 이러한 와중에 2018. 4. 23.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는 2018. 5. 2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위 법률은 2018. 5. 29. 법률 제15622호로 공포, 시행됨

2. 특별검사법의 제정경과

- 2018. 4. 17. 법률안 제안(최교일 의원 등 114인,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 4. 23. 법률안 제안(김성태 의원 등 3인 외 154인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 5. 21.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18. 5. 21. 법률안 제안(법제사법위원장)(의안2013660호)
- 2018. 5. 21. 본회의 상정(제360회 제3차)
- 2018. 5. 21. 본회의 의결 및 원안가결
- 2018. 5. 21. 정부이송
- 2018. 5. 29. 공포(법률 제15622호)

3.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특별검사법 제2조 제1호)
-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특별검사법 제2조 제2호)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특별검사법 제2조 제3호)
-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특별검사법 제2조 제4호)

4. 수사팀 편성 현황

가. 특별검사의 임명

○ 대통령은 2018. 6. 7. 허익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

나. 인적구성 (총 88명)

○ 대통령은 2018. 6. 15.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보 후보 6명 중 김대호, 박상용, 최득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

○ 특별검사는 방봉혁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17명, 파견 공무원 35명(검찰 22명, 경찰 11명, 국세청 2명), 행정지원요원 19명(운전요원 5명, 방호요원 7명, 사무보조 7명)을 임명하여 총 87명으로 인적 구성을 함

다. 물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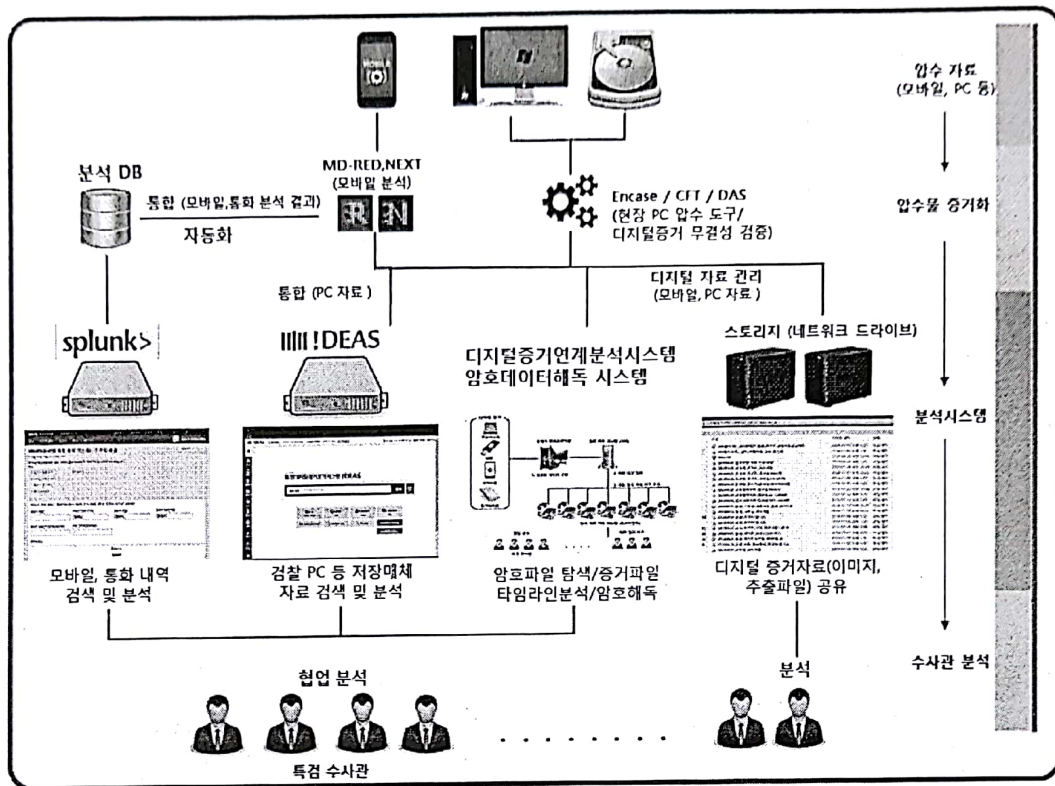
○ 특별검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5(진명빌딩)(지상 7층부터 13층)에 특별검사 사무소를 설치

5.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과학수사 장비 구축

○ 나스 서버(대용량 디지털 증거 저장 및 네트워크 운영 장치) 1식, 모바일 통합 분석 서버 1식,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서버 1식, DB분석 서버 1식, 디지털증거연계분석시스템 서버 1식, 암호데이터해독시스템 서버 1식 등 과학 수사 장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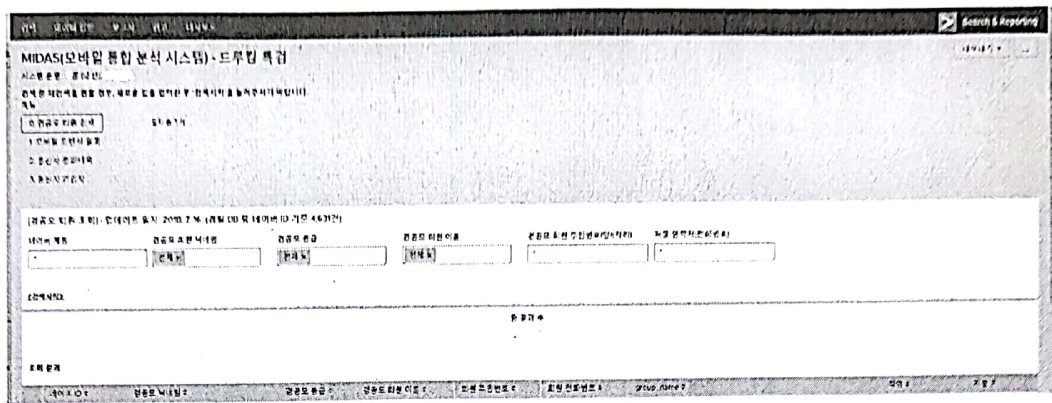
나. 디지털 분석 시스템 개요



다. 디지털 분석 시스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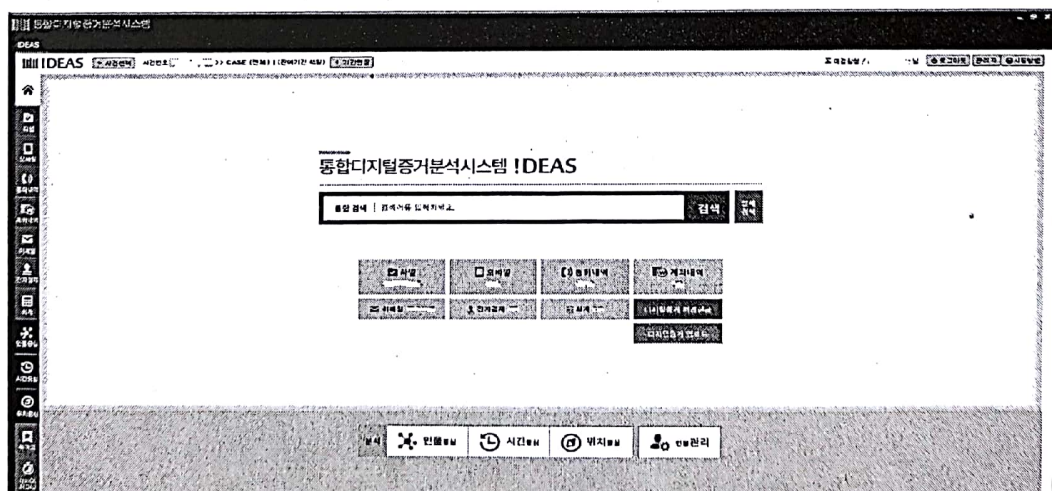
□ 모바일 통합 분석 시스템(MIDAS) : 자체 구축

- Mobile Integrated Data Analysis System의 약자로, 방대한 모바일 관련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구축한 웹기반 검색 시스템
- 모바일기기에서 산출한 약 685만건의 분석 정보, 통신사실조회요청 자료 약 10.1만건, 통신사 가입자내역 약 1.3만건, 경공모 회원정보 약 5천건 검색 제공
- 경공모 회원정보 검색, 모바일 포렌식 결과 키워드 검색, 대상자별 통신사 통화내역 검색, 통신사 가입자 조회 등 기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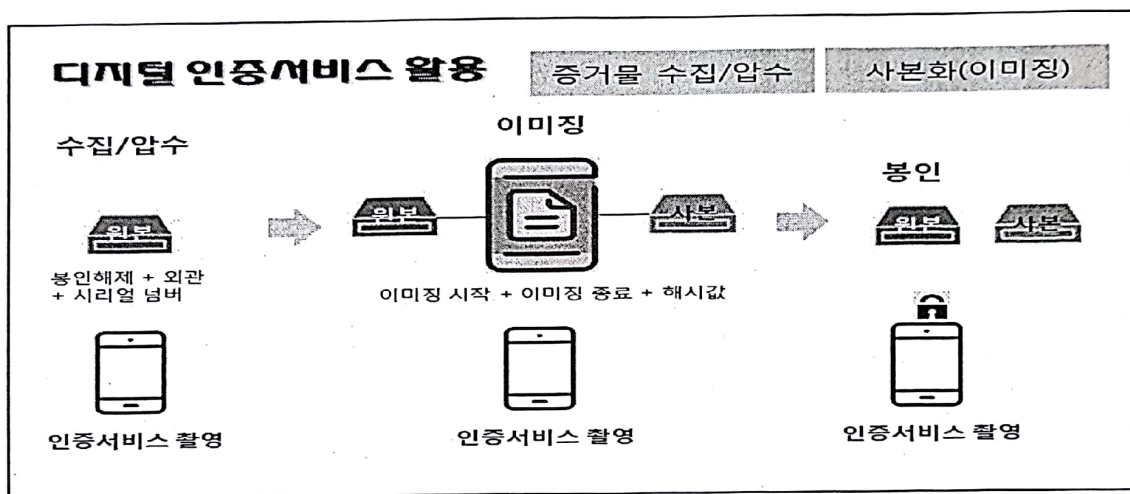
□ 통합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IDEAS) : 검찰 개발 시스템

- Integrated Digital Evidence Analysis System의 약자로, PC, 모바일, 외장하드, USB, 이메일, 전자결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디지털증거를 사건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다운로드 등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파일, 모바일, 통화내역, 계좌내역, 이메일, 전자결제, 회계 등 디지털 증거별 검색과 통합 검색기능 제공
- IDEAS 3.0에서 인물중심, 시간중심, 위치중심, 인물중심으로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 추가
- 검색결과 증거파일에 대한 파일다운로드 기능과 검색결과 엑셀 저장 가능



□ 디지털인증시스템(DAS)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발 시스템

-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의 약자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 즉시 해시값을 생성하여 무결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의 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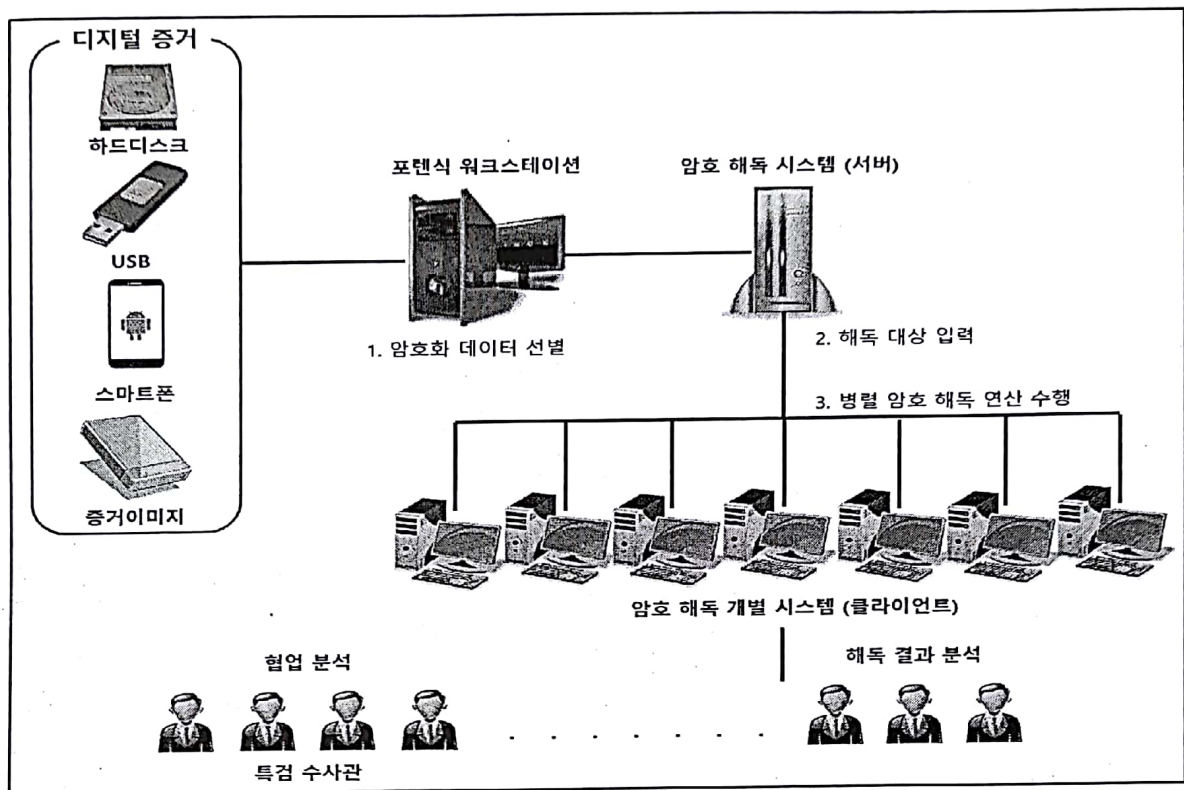


□ 디지털증거연계분석시스템(키체인) : 자체 구축

- 주요 관련자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암호화되었거나 은닉된 증거를 탐지, 문서 형태의 내부 문자열 검색 등 정밀 분석 지원
- 주요 관련자들이 소지한 증거파일 공유 상황을 시간대별(타임라인) 시각화 분석, 증거 유입(생성 · 삭제 · 이동) 확인

□ 암호데이터해독 시스템 : 자체 구축

- 수사대상자들의 정보를 이용, 암호 해독 진행
- 서버간 병렬 연산 방식을 통한 효율적 분석 지원



II

수사의 진행경과

1. 수사의 원칙

-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
- 증거에 의한 수사
- 과학적 기법에 의한 수사

2. 수사기간

가. 수사준비기간 : 2018. 6. 7.~2018. 6. 26.(20일)

-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보 임명 및 파견검사 발령 직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 사본(약 60,000쪽)을 인계받아서 검토한 다음, 수사의 방향과 중점 수사사항을 결정하였음

나. 수사기간 : 2018. 6. 27.~2018. 8. 25.(60일)

-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아래 3.항, 4.항과 같은 수사활동을 하고, 2018. 8. 25. 수사를 종결하였음

3. 주요수사활동

- 압수수색 49곳
- 포렌식 분석 16.38.TB(PC 등 저장매체 195개, 모바일 70개)
- 계좌추적 48명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 3건

<특검의 디지털 증거 압수 자료 현황>

구분	수량	크기(TB)	
		증거 이미지	증거 추출 파일
PC등 저장매체	195	4.87	9.02
모바일	70	2.21	0.2
합계	265	7.08	9.28

※ 임의제출 자료 포함

4. 주요 수사경과

- 6. 27. 특검 수사 개시
- 6. 28. 경공모 회원 도두형, 윤평의 주거지, 변호사 사무실, 김동원 등 구속
피의자의 구치소 거실에 대한 압수수색
- 7. 2. 경공모 운영 계좌 등 금융계좌영장 집행
- 7. 14. 경공모 회원 조영웅, 오영재, 이다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 7. 16. 파주 창고(경공모의 물건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
- 7. 17. 한주형 보좌관 압수수색
- 7. 18. 도두형, 구속영장 청구(기각)
- 7. 20. 김동원, 우경민, 박선민, 양상현 추가기소
- 7. 25. 경공모 회원 김보중, 강기대 주거지 압수수색
- 7. 26. 경공모 회원 김보중, 강기대 구속
- 8. 2. 김경수 지사 집무실, 관사, 국회 압수수색
- 8. 6. 김경수 제1회 피의자신문

- 8. 8. 도두형,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 8. 10. 김경수 제2회 피의자신문(김동원 대질)
- 8. 13. 김보중, 장기대 구속기소
- 8. 15.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 8. 17.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 8. 24. 김경수, 김동원 등 기소

Ⅲ

주요사건 수사결과

1.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순위 조작 사건

공소사실 요지

김동원 등이 2016. 12.~2018. 3.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 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기계적, 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포털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고인 (9명)

- 김동원(닉네임 드루킹, 경공모 회장)
- 도두형(닉네임 아보카, 전략회의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
- 우경민(닉네임 둘리, 산채 스텝, 킹크랩 개발·유지·보수)
- 양상현(닉네임 솔본아르타, 산채 스텝, 유심비 지급, 킹크랩 운영)
- 박선민(닉네임 서유기, 산채 스텝, 킹크랩 운영총괄)
- 김보중(닉네임 초뽀, 산채 스텝, 유심·휴대폰 수집, 킹크랩 운영)
- 강기대(닉네임 트렐로, 산채 스텝, 킹크랩 개발·유지·보수)
- 김종호(닉네임 파로스, 산채팀 총괄, 경공모 자금 관리)
- 김대기(닉네임 성원, 전략회의팀, 유심칩 제공, 휴대폰 관리)

나. 공소사실 요지

- 2016. 12. 4.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하며, UA(User Agent)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2,339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총 81,321개의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총 1,408,331개에 합계 99,643,68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여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 2017. 2. 5.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킹크랩을 이용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로 총 293개의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총 2,268개에 합계 64,980회의 추천/반대를 클릭하여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 2017. 3. 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킹크랩을 이용해 총 204개의 다음 아이디로 총 9개의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총 44개에 합계 3,122회의 추천/반대를 클릭하여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SK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다. 처분 결과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보중, 강기대는 각 구속 기소,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불구속 기소
- ※ 서울중앙지검은 2018. 4. 17.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을 구속기소, 2018. 5. 15. 박선민을 구속기소, 2018. 6. 18. 위 4명에 대하여 추가기소

- 다만, 윤평(닉네임 삶의축제, 전략회의팀)은 위 혐의로 인지하였으나, 캣크 랩활동 관여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
- ※ 위 관련 다른 피의자 3명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인지한 피의자의 혐의와 동일하여 검찰에 인계

라. 참고사항

(1)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라 칭함)

- 김동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드루킹의 자료 창고’라는 진보 성향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파워블로거로 주목받았고, 드루킹의 블로그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블로그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음
- 김동원은 2009. 1.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2014. 11. 9.경 파주시 광인사실 111에 3층 규모의 사무실을 개설하였으며, 2015.경 제조·도매 회사인 ‘느릅나무’, 그 쇼핑몰인 ‘플로랄맘’, 출판사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하였으며, 2018. 3.경 경공모 회원은 약 5,000명에 이르게 되었음
- 김동원등이 2013년경 제정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규약’은 정치적으로는 비밀결사체를, 사회·경제적으로는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의 소유를, 이념적으로는 김구 선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를 이어받는다고 선언

(2) 킹크랩 개발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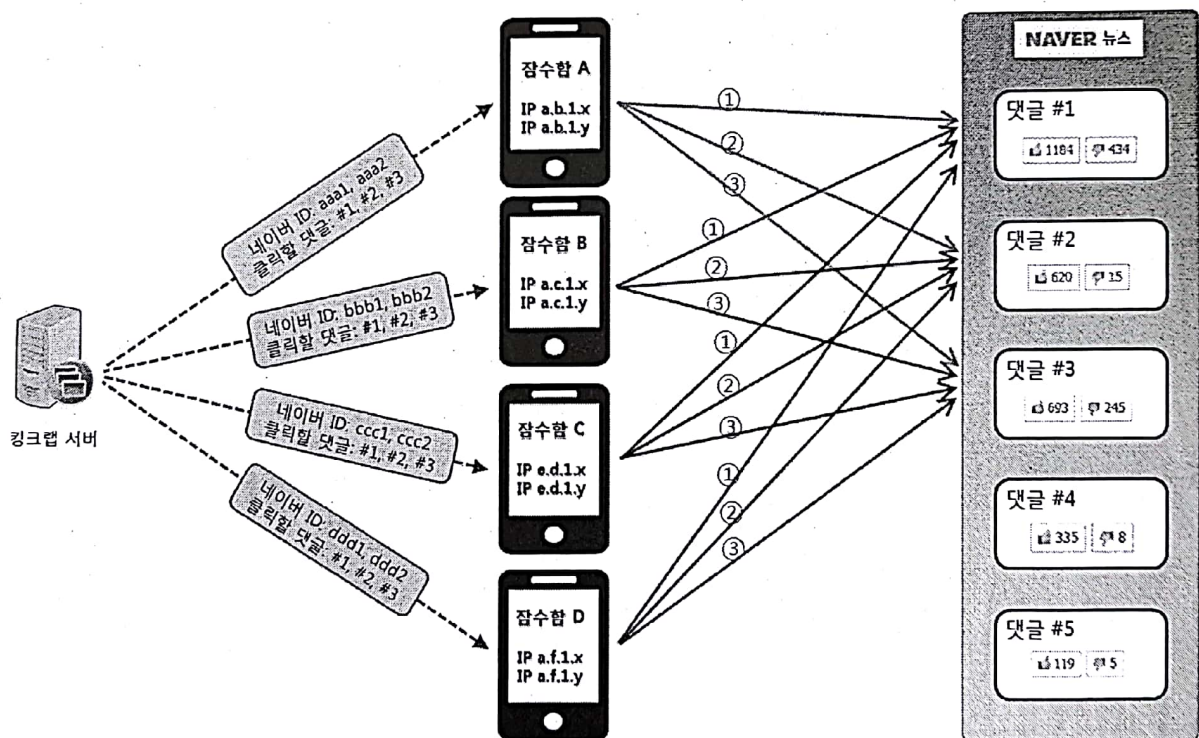
- 김동원은 2016. 여름경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 대선 당시 댓글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해 운영하여 효과를 많이 봤고, 2017. 대선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을 느껴 김경수 의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김경수 의원에게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 계속 개발하게 되었음
- 김동원의 지시를 받은 경공모 회원인 우경민, 강기대가 2016. 10.경부터 킹크랩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6. 11.경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며, 2016. 12.경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실제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3)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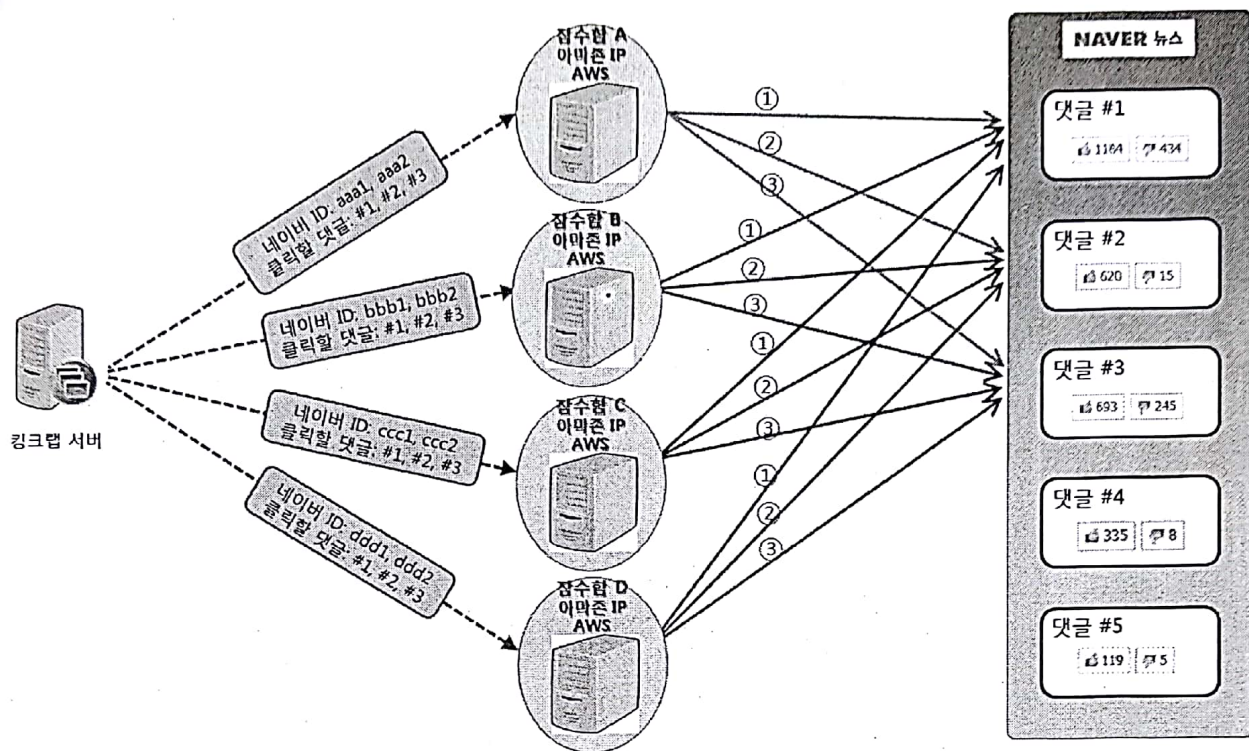
- 킹크랩은 크게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관리서버와, 관리서버로부터 명령과 아이디, 비밀번호, 대상 기사 및 댓글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 실제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기기(일명 잠수함)로 구성되고, 잠수함에서는 포털사의 매크로 사용 방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IP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포털사에서 동일 접속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쿠키값을 초기화하고, UA(User Agent) 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가며, 할당된 아이디들로 자동 로그인한 후 대상 기사의 대상 댓글들에 대한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클릭을 기계적·반복적으로 수행함
- 구체적으로 2016. 12.경부터 2018. 2.경까지는 200여대까지의 휴대전화를 잠수함으로 이용하여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를 통해

IP를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임의의 UA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동작하였고(1차 버전),

-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는 아마존 AWS(Amazon Web Service) 서버의 각 리전(Region, 서버 소재지) 별로 10대씩 총 100대의 서버 인스턴스를 잠수함으로 이용하여 ① AWS서버 인스턴스 동작 정지/시작을 통해 IP를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통해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이용하여 UA 정보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동작하였음(2차 버전)



<킹크랩 1차 버전 동작 개념도>



<킹크랩 2차 버전 동작 개념도>

- 킹크랩 2차 버전은 1차 버전에 비해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동작 실패 가능성이 낮고, 관리서버는 물론 잠수함까지도 모두 해외 서버에 설치되어 동작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으로 판단됨
- 특검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압수하였으나 암호 해제에 실패하여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강기대의 노트북의 암호를 해제하여, 그 안에 저장된 킹크랩 관리서버의 메뉴 구성 및 동작, 소스코드 등을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킹크랩의 기능을 명확히 확인하였음

(4) 불법 댓글 순위 조작 경과

- 김동원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 12.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2016. 12.경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실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됨
- 2018. 2. 7.경 JTBC에서 킹크랩과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 매뉴얼’에 관해 보도하자, 그 무렵부터 킹크랩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2차 버전 킹크랩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2018. 2. 21.경부터 다시 2차 버전을 이용한 킹크랩 운영을 재개하였음
- 이후 네이버 및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8. 3. 21. 경공모의 본거지인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동원 등을 긴급체포하면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종료하였음

(5)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 공범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수집내역이 저장된 아이디, 경공모 회원 정보로 가입한 아이디 등 킹크랩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들을 선별하고, 킹크랩의 동작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엄격한 킹크랩 판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선별된 아이디들이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클릭한 내역 중 위 킹크랩 판별 기준을 만족하는 내역을 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으로 추출하였음

- 특검 수사과정에서, 기존 로그 자료 외에 웹페이지 방문로그, 클릭로그를 추가 분석하여 킹크랩 이용 내역을 보다 정확히 추출하였고, 네이버 이외에 다음, 네이트를 대상으로도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네이트의 로그를 추가로 분석하여 다음, 네이트에 대한 범행 내역까지 추가로 밝혀내었음
- 이를 위해 특검 수사 초기부터 약 50일간 네이버 측과 14차례 협의 및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2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네이트 측과 각 2차례 협의 및 다음, 네이트 관계자에 대한 2차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3개 포털사를 상대로 5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네이버 약 263GB, 다음 약 8.3GB, 네이트 약 6.2GB 등 합계 약 277.5GB 용량의 로그 데이터에 대한 DB 분석을 진행하였음
- 특검에서 범행 내역 추출을 위해 분석한 대상 로그 수는 네이버 총 2억 9,941만건, 다음 총 83만건, 네이트 총 3만건임
- 이에 따라 산정된 각 포털사 별 댓글 순위 조작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네이버	다음	네이트	합계
아이디 개수	2,339	484	204	3,027
기사수	81,321	293	9	81,623
댓글수	1,408,331	2,268	44	1,410,643
공감/비공감 총 클릭 수	99,643,686	64,980	3,122	99,711,788

- 위 범행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이버 관련 뉴스기사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을 월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공감 클릭수	비공감 클릭수	총 공감/비공감 클릭수
2016년 12월	984	170	1,154
2017년 01월	12,531	2,337	14,872
2017년 02월	19,645	5,113	24,757
2017년 03월	626,168	121,481	748,039
2017년 04월	6,590,985	1,052,250	7,683,677
2017년 05월	6,645,178	876,822	7,481,997
2017년 06월	4,511,298	643,326	5,160,199
2017년 07월	4,927,978	381,625	5,313,663
2017년 08월	6,554,123	706,042	7,253,536
2017년 09월	6,927,248	509,342	7,463,137
2017년 10월	6,208,948	425,001	6,670,257
2017년 11월	6,634,853	382,101	6,976,711
2017년 12월	5,139,662	932,661	6,059,018
2018년 01월	15,932,856	6,712,845	22,659,752
2018년 02월	7,721,657	3,075,103	10,769,564
2018년 03월	4,126,627	1,236,726	5,363,353
합계	82,580,741	17,062,945	99,643,686

- 위 월별 내역을 제19대 대선일(2017. 5. 9.) 전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음

	공감 클릭수	비공감 클릭수	총 공감/비공감 클릭 수
대선일 이전	11,052,633	1,601,353	12,653,986
대선일 이후	63,071,343	12,608,241	86,989,700
합계	71,538,108	15,461,592	99,643,686

2.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순위 조작 공모 사건

공소사실 요지

김경수 前 국회의원이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가. 피고인

○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6. 6. 30.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동원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총 7개의 네이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다. 처분 결과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공모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라. 참고사항

(1)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과의 관계

- 피고인은 2016. 6. 30.부터 2018. 2. 20.까지 김동원과 경공모 사무실(산채)에서 3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8회(1회 만남 여부 다름 있음) 등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났음
-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시그널 및 텔레그램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각종 보고서의 문서정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김동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기타 정치관련 정보, 인사 청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였음

(2)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가담 경위

- 김동원은 2016. 9. 28. 산채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정치단체의 댓글 운용기에 대해 설명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16. 11. 9. 오후 산채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에 대한 브리핑과 개발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음
- 김동원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서의 내용과 댓글 작업과 관련된 기사목록, 브리핑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

- 특히, 최근 압수된 노트북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 코드 파일을 확보하였고, 시연 시간대의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기록 전체 약 1,700만 건을 분석하여, 시연 일시에 네이버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네이버 기사에 공감 클릭을 반복한 내역이 위 소스코드 파일과 같음을 발견해 냄으로써 킹크랩 시연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

(3) 구속영장의 청구

2018. 8. 15.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범죄의 중요성, 기 공범자의 구속 등 감안하여 구속영장 청구함(법원기각)

3.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사실 요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가. 피고인

○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들과 2016. 11.경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및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

- 대선 후인 2017. 6. 7.경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까지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그 무렵부터 김동원은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진행경과를 수차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의사로 위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

다. 처분 결과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4. 故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

공소사실 요지

- 김동원, 도두형은 2016. 3. 7.경 노회찬에게 2,000만원, 3. 17.경 3,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 김동원, 도두형, 김종호, 윤평은 2016. 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

가. 피고인

- 김동원(48세), 경공모 대표
- 도두형(61세), 변호사, 경공모 회원
- 김종호(48세), 경공모 회원(회계 담당)
- 윤평(46세), 변호사, 경공모 회원

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김동원, 도두형은

- 2016. 3. 7.경 노희찬에게 2,000만원, 3. 17.경 3,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정치자금법위반]
- 2016. 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김종호 등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김종호는

- 2016. 7.경 경공모 회원 김경란에게 빌린 현금 4,200만원을 촬영한 뒤 위 돈을 경공모 운영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윤평은

- 2016. 8.경 위조된 '통장입금내역 및 허위 지출내역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처분결과

- 피고인들은 각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음

라. 참고사항

- 김동원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2016. 11.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 김동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에 노회찬의원
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음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3호

- 김동원, 도두형, 김종호 등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 중 노회찬의 사망
(2018. 7. 23. 사망)으로 기부자들에 대하여만 수사가 진행되었음
- 2016. 7.경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 도두형, 윤평이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인지하였음
- 노회찬은 정식 입건 전 사망하여 별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

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건

공소사실 요지

한주형(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은 2017. 9. 25.경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김동원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3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 피고인

- 한주형(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
- 김동원(경공모 운영자)
- 김종호(경공모 회원)
- 김대기(경공모 회원)

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한주형은 2017. 9. 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동원, 김중호, 김대기로부터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
- 피고인 김동원, 김중호, 김대기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주형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뇌물공여]

다. 처분 결과

- 2018. 8. 24. 각 불구속 기소

라. 참고사항

(1) 한주형 보좌관과 경공모 회원의 관계

- 한주형은 2016. 5.부터 2018. 3.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인 김경수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2017. 11. 경공모 사무실 등에서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과 총 9회 접촉하는 등 친분관계 유지
- 김동원은 한주형을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한 빠른 민원 전달을 위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

(2)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500만 원 수수 가담 여부

- 관계자들 진술 및 김동원과 김경수의 2018. 3. 15.자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여한 증거는 없음

(3) 한주형의 키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인지 여부

- 한주형과 김동원 등의 진술, 확인된 문자메시지 등 모든 관련 자료에 비추어 경공모의 키크랩 이용 댓글조작사실에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IV 의혹사항 조사결과

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부인의 경인선 관련 의혹

- 2017. 4.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현장에서 당시 후보자부인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상을 근거로 드루킹과 경공모 불법활동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이 경선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므로,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2.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원 수수 의혹

- 송인배가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원을 수수하고, 김경수를 소개하는 등 경공모 댓글순위 조작 행위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
-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3호

- 조사 결과, 송인배는 2016. 6. 30.부터 2017. 3. 2. 사이 총 5회에 걸쳐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났고, 2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수수명목에 대하여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다르다 하여도 정치자금법위반의 혐의가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건 외에 외부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명목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안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함께 이관 예정임

3. 윤평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 및 아리랑TV 비상임감사 제안 의혹

- 2017. 11.경 김경수 국회의원이 윤평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2018. 3.경 청와대 관계자가 윤평에게 전화하여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경공모 내부에서 윤평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외부로 표출된 증거는 전혀 없음
- 청와대 관계자가 윤평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윤평이 거절하였고, 아리랑TV 비상임감사의 경우 1년에 4~5회 있는 회의에 참석시 회의비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어 위 직위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제안할만한 직위로 보기 어려우며, 위 제안과 김경수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고 그 외 불법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4.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김동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의혹

- 김경수 전 국회의원이 킹크랩 시연을 본 후 김동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경공모 회원의 1회 진술이 있었으나, 바로 진술을 번복한 후 특검에서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동원과 다른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도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당시 김경수로부터의 현금봉투 수수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100만원의 현금봉투수수 의혹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5.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등 불법자금 조사

- 경공모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킹크랩 운영 서버비 등 월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외부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음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3호

- 조사 결과, 경공모는 사무실 임대료, 킹크랩 운영비 등으로 29억8천만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경공모의 자체 수입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

※ 수입·지출 총계 및 세부 항목

구분		금액(원)
수입	강의료	1,519,000,000
	공동구매 수입	716,000,000
	플로랄맘 매출	155,000,000
	기타 현금입금	636,000,000
	합계	3,026,000,000
지출	경공모운영비	1,807,000,000
	임대료, 임대보증금	195,000,000
	킹크랩 운영 관련 비용	50,000,000
	기타	935,000,000
	합계	2,987,000,000

6. 김경수의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 김경수가 경공모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이 있었음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3호

○ 경공모 회원 195명 명의로 2016. 9. 12.부터 2016. 11. 30.까지 총 195회에 걸쳐 김경수 후원회 계좌로 총 25,64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경공모 회원들의 계좌와 더불어 확인한 결과 경공모나 관련법에서 금지한 단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었음

7. 안철수 대선 캠프 선거홍보회의 내용 유출 의혹

○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의 홍보전략 등을 경공모 회원을 통해 김경수에게 전달하였다는 의혹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4호

- 조사 결과, 김동원이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의 동영상 제작 홍보전략회의 내용을 제보받은 사실이 있고, 그 회의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됨
- 다만 이를 한주형이 받았다거나 나아가 김경수가 해당 회의내용이나 결과를 수집, 문서를 작성하도록 개입하였다거나 수집한 내용을 작성한 문건을 김동원 또는 경공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증거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V

검찰 이관 사건

1. 송인배 현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가. 개요

- 송인배가 김동원 등 경공모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계좌추적 결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금액의 입금 사실이 발견됨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4호

나. 관련 의혹

- 2010. 8. 1.부터 2017. 5. 10.까지 A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을 가장하여 합계 약 2억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

다. 참고 사항

- 송인배는 이 부분 의혹에 관하여 진술 거부

- 위 계좌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김동원이나 경공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안을 검찰로 이관 예정임

2.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

가. 개요

-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의한 경공모 측의 인사청탁 등 관련 사안을 은폐할 목적으로 인사추천 대상자인 도두형 변호사 면담

※ 관련근거 : 특별검사법 제2조 제4호

나. 관련 의혹

-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2018. 3. 21.(경공모 압수수색일) 도두형 변호사에게 면담요청하고, 3. 23.(김동원등 구속일) 면담한 것은 관련사건을 보고받은 후 면담한 것이라는 등 면담의 이유나 과정의 적정여부에 의혹

다. 참고 사항

- 백원우, 도두형,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의 각 진술결과 인사청탁관련 사안 은폐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의 점에 대하여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검찰로 인계하도록 함

1. 수사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가. 사건의 특성에 따른 수사준비 기간 내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 시급성

- 특별검사의 수사준비 기일은 20일임
- 파견검사 등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채용, 이 사건의 특성에 따른 포렌직 장비 및 DB 구축 등은 그 필요성여부판단 및 장비 확보, 관련 인력의 확보에 상당시일이 필요
- 사안의 특성에 따른 수사준비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있음

나. 특검 사무실의 마련 및 위치

- 특별검사는 원활한 영장청구 등을 위하여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접한 서초구 등 도심에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주의 계약 기피에 직면하였고, 민간건물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향후 특검 구성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건물 일부를 특별검사 사무실로 활용하여 사무실의 조속한 확보나 최소한의 수사보안을 유지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2. 특검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지원

- 특별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공문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제반 정보 수집에 차질이 있었음
- 향후 특검 구성시에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의 지원이 필요함

나. 탄력적 예산 편성 및 운영

- 수사준비기간에도 임차보증금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나, 실제 예산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지급되어, 예산 지급 전에는 특별검사 개인 비용으로 선지출하는 부담이 있었음
- 향후 특검 구성시에는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등 필요자금을 선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다. 공소유지 지원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가 포함되고,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 특별검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한편,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 중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에 관한 명시적은 규정을 둬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라. 수사 중 사건에 대한 특검과의 수사권의 조정 및 수사대상의 명확성 필요

-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특검법이 시행됨
- 수사 중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법에 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은 수사하는 것이어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의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근거규정이 필요함
- 또한 수사대상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기간 동안 방치될 우려 있음

VII 맺음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특별검사팀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피의자별 사건 처분 결과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처분	비고
1	김경수 (경남 도지사)	-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2. 1.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총 7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188,866개에 총 88,40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업무방해] '17. 12. 28. 및 '18. 1. 2.경, '18. 6. 13. 실시될 제7회 지방 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샌다이 촬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8.24.)	
2	김동원 (드루킹)	- 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업무방해] ※ 위 범죄사실 중 '18. 1. 17.~18. 53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지검 기소 - 도두형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 3. 7.경 2,000만원, '16. 3. 17.경 3,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도두형과 공모하여, '16. 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도두형, 김종호, 윤평과 공모하여, '16.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 김종호, 김대기와 공모하여, '17. 9. 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촬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추가 기소 (7.20., 8.24.)	중앙지검 구속기소 (4.17., 6.18.)

3	도두형 (아보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불구속 기소 (8.24.)	
		-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 3. 7.경 2,000만원, '16. 3. 17.경 3,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김동원과 공모하여, '16. 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김동원, 김종호, 윤평과 공모하여, '16.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4	우경민 (둘리)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위 범죄사실 중 '18. 1. 17.~18. 53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지검 기소	추가 기소 (7.20., 8.24.)	중앙지검 구속기소 (4.17., 6.18.)
5	양상현 (솔본 아르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위 범죄사실 중 '18. 1. 17.~18. 53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지검 기소	추가 기소 (7.20., 8.24.)	중앙지검 구속기소 (4.17., 6.18.)
6	박선민 (서유기)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위 범죄사실 중 '18. 1. 17.~18. 53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지검 기소	추가 기소 (7.20., 8.24.)	중앙지검 구속기소 (5.15., 6.18.)

7	김보중 (초췌)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기소 (8.13., 8.24.)	
8	강기대 (트렐로)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기소 (8.13., 8.24.)	
9	김종호 (파로스)	-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6. 7.경 김동원, 도두형의 지시를 받고,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작성 [증거위조] - 김동원, 도두형, 윤평과 공모하여, '16.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 김동원, 김대기와 공모하여, '17. 9. 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8.24.)	
10	김대기 (성원)	-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김동원, 김종호와 공모하여, '17. 9. 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8.24.)	

11	윤평 (삶의 축제)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 12. 4.~'18. 3.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없음 (8.25.)	
		김동원, 도두형, 김종호과 공모하여, '16.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8.24.)	
12	한주형 (김경수 前의원 보좌관)	'17. 9. 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김동원 등으로부터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수수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8.24.)	

검찰 이관 사건

순번	참고인	의혹 사실 요지	참고사항
1	송인배 (정무 비서관)	'10. 8. 1.~'17. 5. 10. A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8,000만원 수수 ※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	경공모와의 관련성 발견되지 아니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2	백원우 (민정 비서관)	'18. 3. 23. 도두형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이유나 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음 ※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은폐에 대한 증거 없고 직권남용부분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